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형벌의 과태료 전환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85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정부 제출(2201185)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처분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전환(안 제63조제4호 삭제 및 제65조제1항 신설)	2

□ 정 부 제출(2201185)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06. 28.
3. 회 부 일 : 2024. 07. 0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처분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전환(안 제63조제4호 삭제 및 제65조제1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63조에서는 「교통안전법」 제39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새로이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러한 벌칙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 5. (생략)	제63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 <신설>	제65조(과태료) ① 제4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

현행	개정안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u>태료를 부과한다.</u>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¹⁾).

1)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법 제39조²⁾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2조³⁾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음. 2024년도 6월말 기준,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총 75개소(도로분야 61개소, 철도분야 14개소)⁴⁾임.

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등 다음 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교통안전법」

제39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7. 1. 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2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9. 19.>

1. 전문인력 : 별표 4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인정기준에 따른 인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
2. 장비 :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도로분야
2. 철도분야
3. 공항분야

4) ‘공항분야’는 「공항시설법」 제38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고 있어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공항시설법」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위반사항	관련조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43조 제1호	등록취소	-	-
나. 최근 2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새로이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43조 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당해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41조(결격사유)	법 제43조 제3호	등록취소	-	-
라.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때 * 법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법 제43조 제4호	등록취소	-	-
마.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	법 제43조 제5호	등록취소	-	-
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39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법 제43조 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하게 한 때	법 제43조 제7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법 제45조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때 * 법 제45조(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의 평가 등)	법 제43조 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음영은 동 개정안의 대상 조항

* 「교통안전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법 제63조에서는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관련하여, 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거나, 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③ 명의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교통시설안전진단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에서 법 제63조제4호의 ‘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⁵⁾.

동 개정안은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성된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⁶⁾에서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2023.10.12.)’에 포함된 내용임.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는 크게 ①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5) 참고로, 법 제44조제1항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법 제63조제4호에서는 새롭게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제43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당시에 이미 착수한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그 처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제1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업무에 관하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본다.

6) 2022년 7월 출범.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②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 ③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을 기준으로,

연구기관(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총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을 선정한 바 있음.

<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 개선방안 개요 >

합 계	행정제재 등 활용			④형량조정
	①행정제재 전환	②先행정제재 →後형벌 전환	③기존 행정제재 조항 등 활용	
46개	20개	19개	1개	6개

* ①단순 행정의무 위반의 경우 ②행정조치를 통한 집행력 확보가 가능한 경우

③중복제재·규율 등이 이뤄지는 경우 ④비례성, 일관성 고려시 형량이 과도한 경우

* 자료 :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 2023.10.12.

개정안은 이 중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 제·개정 5년 이상 경과한 사문화된 규정에 해당하며 단순 행정의무 위반으로 보아, 기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벌칙을 과태료 2천만원 이하로 전환하려는 것임⁷⁾.

7) * 자료 :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 및 향후 추진계획”, 관계부처합동, 2023.10.12.

동 개정안의 대상인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실시한 때’에는 현행 법 제43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기관의 등록이 취소되는바, 해당 조문은 동일한 행위를 행정제재와 형벌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과도한 측면도 존재함.

이처럼 행정적 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형벌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T/F에서 검토된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⁸⁾.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형법」 제1조제2항⁹⁾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8) 유사 입법례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형벌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⁰⁾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¹⁾을 고려할 때 부칙의 경과조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교통시설안전진단기관이 제63조 제4호에 따라 벌금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는바 개정안과 같이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여도 기존 제재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1)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다. 국토교통부 의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인 경우 ‘형벌’을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4